

민권이란?

민권은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는 법률입니다. 1964년의 민권법, 1973년의 사회복지법 조항 504, 1990년의 미국장애인법, 그리고 기타 연방 및 주 규정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누구를 보호해 줍니까?

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현금 보조, Medi-Cal, CalFresh,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다면, 이러한 혜택과 관련된 차별로부터 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며 다음과 같은 특정 권리를 갖습니다.

다음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신청자나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서비스와 배려, 및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:

인종, 피부색, 혈통, 국적 (언어 포함), 민족 그룹 구별, 연령,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, 건강 상태, 종교, 성별,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, 성적 취향, 결혼 여부, 동거 관계, 정당 가입, 시민권, 이민 신분, 및 유전 정보. 및 보복행위.

당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:

- 혜택을 신청할 때나 혜택을 계속 받고 있을 때, 어떤 언어든지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습니다.

- DPSS 고객센터센터에 866-613-3777번으로 전화하여 당신이 받은 카운티 영어 통지서를, 어떤 언어로든 구두로 읽고 통역 및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; 그리고
-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, 당신이 DPSS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참여할 수 있게 돕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불만 제기를 어떻게 합니까?

인종, 피부색, 혈통, 국적 (언어 포함), 민족 그룹 구별, 연령,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, 건강 상태, 종교, 성, 성별,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, 성적 취향, 결혼 여부, 동거 관계, 소속 정당, 시민권, 이민 신분, 및/또는 유전 정보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, 또는 DPSS 직원 또는 계약자로부터 보복을 경험한 경우, 그렇다면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취할 수 있습니다:

사회복지국(DPSS) 민권 연락담당관(Civil Rights Liaison)을 찾아 대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그들은 PA 607, "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 제기" 양식을 제공하고 당신이 양식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당신이 민권 불만을 접수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.

또한 이 통지서 다른 면에 기재된 연락 정보를 사용하여,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DPSS 또는 주 및 연방 정부 기관에 직접

연락할 수 있습니다.

민권 부서에 연락함으로써 구두나 서면으로 DPSS 민권 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불만 사항을 문서화하는 PA 607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PA 607 양식은 이를 요청하는 커뮤니티의 모든 개인이나 단체 대리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dpss.lacounty.gov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필요한 경우 민권 부서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신에게 연락하고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드릴 것입니다. 당신이 카운티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(카운티가 당신의 불만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), 30일 이내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부(CDSS)에 항소하거나, CalFresh 프로그램과 관련된 경우에는 90일 이내 미 농무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.

불만 사항은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.

차별에 대한 불만이 당신의 혜택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다면, 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차별 대우 조사로 인해 당신의 혜택이나 서비스가 변경될 수 없습니다. 주 청문회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DPSS는 당신이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차별에 대한 불만 제기를 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.

다음에 해당하는 카운티, 주 및 연방 정부 기관 중 하나 또는 모든 기관에 차별 대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:

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사무소

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관할하는 모든 프로그램:

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
Civil Rights Coordinator
12860 Crossroads Parkway South
City of Industry, CA 91746
(562) 908-8501

DPSSCivilRights@dpss.lacounty.gov

커버드 캘리포니아

Civil Rights Coordinator Covered CA
P.O. Box 989725
West Sacramento, CA 95789
(916) 228-8764

CivilRights@covered.ca.gov

Medi-Cal 및 Medi-Cal 치과 프로그램

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,
Office of Civil Rights
P.O. Box 997413, MS0009
Sacramento, CA 95899-7413
(916) 440-7370 or 711 (CA Relay Service)

CivilRights@dhcs.ca.gov

기타 주정부 프로그램 California

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
Civil Rights Section
744 P Street, M/S 9-7-041
Sacramento, CA 95814
(866) 741-6241 (toll free)
crb@dss.ca.gov

연방 기관

인종, 피부색, 국적, 장애, 연령, 또는 성별 (임신, 성적 취향, 성 정체성 포함)에 따른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:

U.S.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
Office of Civil Rights
200 Independence Avenue, SW
Suite 515F, HHH Building
Washington, DC 20201

온라인으로 불만 접수:

[US Health & Human Services Civil Rights Complaint Portal](https://www.hhs.gov/civil-rights/for-individuals/2025/complaint-portal)

(800) 368-1019 (무료 전화)

(800) 537-7697 (청각/언어 장애인)

OCRMail@hhs.gov

CalFresh 프로그램

연방 기관에 CalFresh 불만을 제기하려면:

AD-3027, USDA 프로그램 차별 대우 불만 양식을 작성완료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한 불만 편지를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:

Food and Nutrition Service, USDA
1320 Braddock Place, Room 334
Alexandria, VA 22314
Fax: (833) 256-1665 or (202) 290-7742
FNSCIVILRIGHTSCOMPLAINTS@usda.gov

주 청문회에 대한 요청

당신의 혜택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DPSS가 취한 조치 또는 취하지 않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, 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카운티의 조치로부터 90일 이내에 주 청문회를 신청해야 합니다. 90일의 기간은 민권에 관한 불만 제기를 했을지라도 적용됩니다. 예정된 조치가 시행되는 날짜

이전에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, 지급 보류 중인 보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:

- 전화: (800) 952-5253 (무료 전화)
- 우편: DPSS에서 보낸 결정 통지서(서신) 뒷면을 작성 또는 서신을 작성(사본 보관)하여, 다음의 주소로 신청서를 보내십시오:
Appeals and State Hearings
P.O. Box 18890
Los Angeles, CA 90018
- 온라인: www.cdss.ca.gov

당신의 우려 사항이 일반구호(GR)와 관련이 있다면,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DPSS에 연락하여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.

합리적인 편의 제공: 장애인을 위한 특별 지원:

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DPSS에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 DPSS는 당신과 협력하여 당신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. DPSS가 당신의 요청을 불결할 경우, 그 부결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당신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 그 통지서에는 당신의 항소 권리에 대한 정보를 기재되어

민권 및 주 청문회에 관한 추가 정보는 지역/지구 사무소 접수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모든 접수처에 배치된 주 안내책자, *캘리포니아 복지 프로그램에 따른 당신의 권리(PUB 13)*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